

기업에 인권 및 환경에 대한 책임을 부과한 프랑스의 실천감독의무법

Lucie Chatelain (프랑스 인권법률가단체 셰르파(Sherpa) 법무 담당관)

■ 서론

지난 수십 년간 기업들은 해외에 지사를 설립하면서 전 세계로 사업을 확장하며 복잡한 글로벌 가치사슬을 통해 아웃소싱을 확대해 왔고, 각국 정부는 자국의 경제 성장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탈규제 경쟁을 진행해 왔다.

이러한 현실은 운송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을 통해 생산과정에서의 비용을 절감하여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순전히 경제적인 이슈로 자주 묘사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은 기존 법규제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¹⁾ 기존의 기업법, 민법, 형사법에서는 모기업 및 대표기업이 해외지사, 공급업체 또는 하청업체가 초래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노동법 규제가 약한 국가에서 노동집약적 사업활동을 하고, 환경규제가 약한 국가에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을 하며, 조세피난처에서 지적재산권 등의 고부가가치 사업을 등록하는 식으로 규제차익²⁾을 추구하면서 사업을

1) Salminen, J. and M. Rajavuori(2019), "Transnational Sustainability Laws and the Regulation of Global Value Chains: Comparison and a Framework for Analysis", *Maastricht Journal of European and Comparative Law*, 26(5), pp.602~627.

2) Katharina P.(2019), *The Code of Capital: How the Law Creates Wealth and Inequali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운영할 수 있었고 때로는 이런 방식이 장려되기도 하였다.

인도의 보팔(Bhopal) 가스 참사, 나이지리아 니제르 델타(Niger Delta)의 기름 유출 사고, 방글라데시 라나플라자(Rana Plaza) 붕괴 사고 등은 그러한 법률 및 경제 체제가 가져온 비참한 결과였다.

이러한 대형 사고들은 민간 주도 방식이 지닌 한계점도 잘 보여준다. 경제적 주체로서의 기업은 법제도 개혁이 아니라 자기 규제라는 해결 방안을 추진해 왔다. 국가가 글로벌 경제 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는 주장하에 윤리규범, 사회적 감시활동, 인증제도, 다중 이해관계자 접근법 등이 민간 거버넌스의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국제 시민사회는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기업의 인권 및 환경 침해 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를 구제할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까지도 이러한 요구는 2011년 UN의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UNGPs)이나 2011년 OECD의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과 같은 연성법 기제의 채택으로만 이어졌다. 이러한 원칙과 가이드라인은 구속력은 없지만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의 일환으로서 “인권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라는 개념의 출현으로 이어졌다.

첫걸음에 불과하지만, 2017년 프랑스에서 “모기업 및 대표기업의 실천감독의무에 관한 법(Law on the Duty of Vigilance of Parent and Lead Companies, 이하 실천감독의무법)”이 제정되면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세계 최초로 국내법에서 모기업 및 대표기업에 해외지사 및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인권 및 환경 침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시행할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그로부터 4년 남짓이 지난 현재, 국제 정치 판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프랑스 실천감독의무법의 영향으로 벨기에, 캐나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등의 국가에서도 국내법이 제정되었거나 법제정을 논의하고 있으며, EU 집행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관련 EU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³⁾

3) EECJ(2021), “Map : Corporate Accountability Legislative Progress in Europe”, <https://corporatejustice.org> (검색일 : 2021.10.20).

■ 프랑스의 실천감독의무법 : 글로벌 가치사슬을 규제하는 국내법

NGO, 노조 및 국회의원들이 전례 없이 연합한 결과물인 실천감독의무법 초안은 2013년 프랑스 의회에 처음 제출되었다.⁴⁾ 필자의 소속기관이자 경제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프랑스 시민단체인 셰르파(Sherpa)는 기업의 인권 및 환경 침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를 대변하여 기존 법령의 문제를 널리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바 있다.

셰르파는 삼성, 오상(Auchan), 빈치(Vinc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기존의 법규정이 초국적 기업의 인권침해를 제재하는 데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밝혔다. 삼성 사건의 경우, 셰르파는 소비자법 위반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에 노동권을 존중한다고 홍보하는 삼성의 상업적 관행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삼성의 윤리경영에 대한 약속과 삼성의 일부 공급망에서 목격되는 노동조건 사이에 간극이 있음을 널리 알렸다.⁵⁾ 여러 차례의 소송 끝에 결국 2018년에 삼성전자가 기소되었지만, 이 건은 2021년에 취하되었다.⁶⁾

실천감독의무법 초안은 기업의 관행에 관한 새로운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 적용하는 것을 법으로 강제하여 기존 법제도상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법 초안에는 기업이 자사의 사업뿐 아니라 자회사 및 하청업체의 사업활동에 대해 보건, 인권 및 환경에서의 위험 발생을 예방할 의무라고 정의한 기업의 실천감독의무라는 새로운 개념이 제시되었다. 기업이 실천감독의무를 이행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사업활동의 결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입증책임은 피해자가 아니라 기업이 지도록 하였다. 또한 형법상 과실의 정의를 수정하여 형사상 책임도 부과하였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입법 초안은 프랑스 기업단체의 격렬한 로비에 막혀서 의회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다.

4) 모기업 및 대표기업의 실천감독의무에 대한 입법 초안(Legislative proposal n° 1519, 6 November 2013).

5) Serpa(2019), "Samsung's Indictment in France: Fighting Transnational Corporations' Human Rights' Violations through Consumer Law", *The Freedom Fund*, August 30, <https://freedomfund.org/> (검색일: 2021.10.20).

6) Serpa(2021), "Violation of Workers' Rights at Samsung: NGOs Barred from Court", <https://www.asso-sherpa.org> (검색일: 2021.10.20).

프랑스 하원의원들은 최초 법안에 비해 규제가 약화된 새로운 법안을 제출하였고, 의회 양원의 오랜 공방을 거쳐 헌법위원회에서 일부 내용이 무효화된 법안이 마침내 2017년 3월 27일에 법으로 공포되었다.⁷⁾

이 법에 따라 상법에는 프랑스 대기업에 대해 “실천감독계획(vigilance plan)”을 수립하고 공표하며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⁸⁾ 실천감독계획에는 합리적인 실천감독조치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러한 조치들은 기업의 활동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기업의 지배하에 있는 업체의 활동과 그 기업과 “사업관계를 맺은” 공급업체 및 하청업체의 활동으로 인한 인권, 기본적 자유, 개인의 보건 및 안전, 환경에 대한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심각한 침해를 예방하는 데 적합해야 한다.

기업은 주주들과의 협의를 거쳐 실천감독계획을 구체화하여야 하는데, 특히 ① 위험 파악, ② 자회사, 하청업체 및 공급업체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정기적 평가 절차, ③ 위험을 완화하고 심각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④ 경고 메커니즘, ⑤ 이러한 조치들의 효과적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모니터링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입법 초안에는 이 같은 구체적인 조치 목록이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법적 명확성을 요구하는 기업의 요구에 따라 이후 법안에 포함되었다.

입법 초안에 있던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은 삭제되었지만, 피해 예방과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법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첫째, 법적 지위를 가진 사람은 누구라도 법원에 기업으로 하여금 실천감독의무를 이행하라는 명령을 내리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단, 먼저 해당 기업에 공식 통지를 하고 3개월 이내에 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 이 방식은 법원의 가처분 명령을 통해 이행을 강제하고 잠재적 위반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예방적 성격을 띤다. 법원은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며 기업에 실천감독계획을 발표하거나, 적정 수준의 실천감독조치를 취하거나, 실천감독계획에 명시된 조치들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도록 사법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정도, 특히 법원이 명령하는 실천감독조치의 구체성

7) 모기업 및 대표기업의 실천감독의무에 대한 2017년 3월 27일 법(Law No.2017-399).

8) 상법 L.225-102조 4항, L.225-102조 5항.

정도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둘째, 기업이 실천감독의무를 제대로 준수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피해가 생겼을 때 기업에 피해구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처럼 실천감독의무는 프랑스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원칙에 따라 모기업 및 대표기업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비위행위 또는 태만에 해당하는 새로운 행동 기준을 부과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이 충분한 실천감독 노력을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을 기업에 명령할 수 있다.

■ 기업의 인권 및 환경 침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새로운 법적 근거

새로운 법규정들은 다양한 NGO, 노조, 학계 및 컨설팅 그룹 사이에서 상당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위에서 설명한 사법적 장치들은 2019년에 발효되어 이미 시민사회에서 기업의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첫 번째 예방적 장치에 따라 기업에 새로운 법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공식 통지가 여러 차례 발송되었다.

실천감독의무법의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법 시행 초기인 현재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어 진행 중이다. 국제노동총연맹은 “텔레퍼포먼스(Teleperformance)”⁹⁾와 “XPO 로지스틱스(XPO Logistics)”¹⁰⁾에 보낸 공식 서한에서 해외 자회사 및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기본권과 단결의 자유에 관한 책임을 물었다. 정유회사인 토탈(Total)의 기후변화 정책과¹¹⁾ 우간다의 원유 프로젝트를 상대로 개시된 절차,¹²⁾ 유통업체인 카지노(Casino)를

9) WSJ(2019), “Teleperformance Faces Allegations of Human Rights Abuse”, *The Wall Street Journal*, July 18, <https://www.wsj.com> (검색일 : 2021.10.20).

10) XPO Global Union Family(2019), “Formal Notice to XPO Logistics Europe under the French Corporate Duty of Vigilance Law”, <https://www.itfglobal.org> (검색일 : 2021.10.20).

11) Vetter, D.(2020), “This French Lawsuit is Making Oil Companies Nervous”, *Forbes*, January 30, <https://www.forbes.com> (검색일 : 2021.10.20).

12) www.totalincourt.org (검색일 : 2021.10.20).

상대로 브라질과 콜롬비아의 소고기 공급망에 대해 개시된 절차¹³⁾ 등은 인권 및 환경 침해의 명확한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현재 실천감독의무법을 근거로 5건의 소송이 프랑스 법원에 계류 중이다.¹⁴⁾ 그중 2건(카지노 건과 EDF 건)은 원고 측이 예방적인 가처분 명령만이 아니라, 기업의 실천감독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며 이에 따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요구하고 있다.

현재까지 실천감독의무법 위반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없으나, 소송 관할법원이 어디인지를 둘러싼 사법적 논쟁이 진행 중인 상황을 보면 이미 법규정에 대해 기업과 시민사회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에서 피고 기업들은 관할법원과 관련하여 기업의 실천감독계획은 그 기업의 경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실천감독계획과 관련한 청구의 심리에 대한 관할권은 전적으로 상사법원에 있다고 주장하며, 동일하게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상태이다.

우간다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토탈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에서, 민사 1심 법원인 낭테르 지방법원(Nanterre tribunal judiciaire)은 회사의 관할권 관련 이의를 받아들여 해당 사건을 상사법원으로 이관하였다.¹⁵⁾ 이 판결은 항소법원에서도 인정되어,¹⁶⁾ 현재 프랑스의 민사 및 형사 관련 최고법원인 대법원(Cour de Cassation)에 아직 계류 중이다.

반면에 기후변화에 미친 영향을 이유로 토탈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의 경우에는, 1심 재판부가 위와는 다른 법리를 적용하여 해당 법원의 관할권을 확정하였다.¹⁷⁾ 해당 사건이 그 기업의 경영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기는 하겠지만, 실천감독의무의 성격과 취지는 기업의 경영

13) Serpa(2020), “Indigenous Organisations and NGO Coalition Warn Top French Supermarket Casino: Do Not Sell Beef from Deforestation in Brazil and Colombia - or Face French Law”, September 21, <https://www.asso-sherpa.org> (검색일: 2021.10.20).

14) Sherpa와 CCFD Terre Solidaire는 기업들이 발표한 실천감독계획을 수집하고 실천감독의무법에 관한 자료와 분석을 제공하며 이 법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절차를 추적하기 위해서 “Duty of Vigilance Radar”라는 웹사이트(<https://www.vigilance-plan.org>)를 운영한다.

15) Nanterre Judicial Tribunal, 30 January 2020, No.19/02833.

16) Versailles Court of Appeal, 10 December 2020, No.20/01692.

17) Nanterre Judicial Tribunal, 11 February 2021, No.20/00915; Chatelain, L.(2015), “First Court Decision in the Climate Litigation Against Total: a Promising Interpretation of the French Duty of Vigilance Law”, *Business and Human Rights Resource Centre*, March 25, <https://www.business-humanrights.org> (검색일: 2021.10.20).

을 훨씬 넘어서는 사안이므로 기업인이 아닌 청구인들이 해당 법원에 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보았다. 특히 재판부는 “상법 L.225-102조 4항은 인권과 자연 전반의 보호가 시장 기반 규제에 충족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 주주총회에서 실천감독계획을 발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는 실천감독계획을 공개하고 법적 지위를 광범위하게 정의함으로써 가능한 강력한 사회적 통제를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이에 토탈 측은 항소를 제기했다.

관할권에 대한 상이한 판결이 내려지자 프랑스 의회에서는 실천감독의무와 관련해서는 일반 민사법원이 배타적 관할권을 지니도록 명시적으로 지정하는 법규정의 입법에 대한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이다.¹⁸⁾

■ 시사점 : 실천감독의무를 넘어서는 기업책임모델

프랑스에서 실천감독의무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이 법의 강점과 약점을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아직 이르다. 현재 계류 중인 사건들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후에야 결론이 내려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해석을 두고 지속되는 의견 대립, 그리고 독일 등 기타 국가에서 최근 채택된 인권실사의무법과 프랑스 법의 근본적 차이를 고려하면서 프랑스 실천감독의무법의 잠재력과 한계를 평가해 보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첫째, 프랑스 법에 명시된 실천감독의무의 범위가 모기업이나 대표기업이 자회사의 기업활동에서 초래된 위반행위뿐만 아니라 사업관계를 맺은 공급업체나 하청업체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혁신적이다. 실천감독의무가 지배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현실에 부합한다. 또한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지배구조 외부에 있는 업체에 위협하거나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을 쉽게 아웃소싱하는 것을 예방한다.

18) Article 34 of the Legislative Project No.4091 on Trust in the Judicial Institution.

하지만 “사업관계(established commercial relationship)”라는 개념은 법적 논란을 가져왔다. 입법부의 의도는 분명 실천감독의무를 회사의 가치사슬 전반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었지만, 일부 논평가와 기업들은 이 개념을 들어 실천감독의무는 간접적 공급업체나 하청업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기업이 중개업체를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잘못된 동기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많은 인권침해 사례를 해결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입법을 준비 중인 국가에서는 입법과정에서 기업에 부과된 의무가 이렇게 제한적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기지 않고 명확하게 가치사슬 전반에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둘째, 기업이 인권 및 환경 침해를 예방하도록 하는 새로운 의무에 대해서 법으로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지가 핵심이다. 일부 국가는 입법안에서 이 의무를 연성법의 인권실사와 동일한 개념으로 정의를 내리고자 하는데, 이는 중대한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인권실사는 기업을 위한 도구로서 개발된 것으로 사법적 검토의 대상이나 법적 방어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개념이 아니다. 또한 이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경영자의 입장에서 개념화한 것으로, 기업 포획¹⁹⁾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²⁰⁾ 이 개념을 법에 도입하는 경우 법제정 의도와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²¹⁾

한편 프랑스에서는 실천감독의무에 대해서 실천감독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여야 하는 의무로 정의하고 있는데, 기업들은 내부 위험관리 절차에 이 의무를 공식화하여 발표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이행하고 있다.²²⁾ 많은 프랑스 기업이 행동지침, 사회감

19) 편집자 주: 기업 포획(corporate capture)은 개인이나 기업이 이익집단을 형성, 정치인과 관료들을 설득해 기업에 유익한 각종 규제정책을 이끌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UNTFSSSE(2020), “UNTFSSSE 성명서: 코로나19 위기 회복을 위한 사회연대경제의 역할은 무엇인가”, <https://unsse.org> (검색일: 2021.10.20).

20) Hamm, B.(2021), “The Struggle for Legitimacy in Business and Human Rights Regulation - a Consideration of the Processes Leading to the UN Guiding Principles and an International Treaty”, *Human Rights Review*, DOI : <https://doi.org/10.1007/s12142-020-00612-y> (검색일: 2021.10.20).

21) Lopez C. and G. Quijano(2021), “Rise of Mandatory Human Rights Due Diligence: A Beacon of Hope or a Double-Edged Sword?”, *Business and Human Rights Journal*, 6(2), pp.241~254.

22) Cossart S., T. B. de Loménie, and A. Lubriani(2019), “L’extension du domaine de la vigilance”,

사, 다중이해관계자의 증명자료, 공급업자의 자기평가 질문지 작성을 내용으로 하는 실천감독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단은 대체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법규정에는 실천감독조치가 “적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효과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많은 기업은 여전히 실천감독계획을 자사의 사업 모델에 영향을 주지 않는 형식적인 컴플라이언스 절차로 받아들이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 있는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토탈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 내려진 판결은 이런 기업들의 인식이 잘못되었음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재판부는 토탈의 실천감독계획 수립 및 이행은 “토탈의 사업활동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자사의 전략과 비전에 인권 및 환경 침해 위험을 통합하고, 실제 사업활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략과 비전을 상당 부분 포기 또는 재편성해야 한다.”²³⁾라고 판시하였다.

이런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향후 입법에서 신설되는 기업의 의무를 기업의 가치사슬에서 인권침해나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실제적인 의무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입법을 준비하는 다른 국가에서 다양한 집행 메커니즘이 도입되면 구제제도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업 의무에 대한 해석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프랑스의 실천감독의무법은 불법행위법(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근간으로 한다. 즉, 법적 지위가 있는 자는 법원에 인권침해와 환경피해를 예방 또는 근절하기 위한 명령을 내리라고 요구할 수 있고, 기업이 실천감독의무를 준수하였더라면 방지할 수 있었던 인권침해 또는 환경피해에 대해 피해자는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피해자는 소송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증거를 기업이 갖고 있다거나 대표기업이 실천감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피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피해구제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기업에 입증책임을 부과하고 모기업 또는 대표기업이 피해를 유발한 기업과 지배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실사를 근거로 한 방어를 금지하는 방식으

Revue des Juristes de Sciences Po, p.88.

23) Nanterre Judicial Tribunal, 11 February 2021, No.20/00915.

로 더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와 같이 엄격한 책임을 도입하면 기업이 공급망에서 인권 및 환경 침해가 발생하지 않게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으나, 이에 반해 과실기반 책임만 묻는 경우에는 서류상으로만 의무를 준수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행정감독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이렇게 행정적 통제만 규정한 것은 아쉬운 점이다. 실천감독의무가 부과되면 기업이 선언한 내용을 현실과 비교·대조함으로써 기업이 취한 조치들이 실제로 구체적인 침해 발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고 적절하였는지를 평가할 수 있으며, 이런 점이 실천감독의무법 제정이 갖는 의미라고 생각된다. 프랑스 행정당국의 과거 사례를 보면 행정적 통제는 실천감독의무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만 강화할 뿐이었다.²⁴⁾

프랑스에서 실천감독의무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 이 법이 프랑스 기업의 가치사슬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평가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 법이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현재, 국내법으로 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경제, 사회 및 환경적 정의 실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면서 다른 국가의 입법에 초석이 되었음은 분명하다. **KLI**

24) Sherpa(2021), “Creating a Public Authority to Enforce the Duty of Vigilance Law : A Step Backward?”, <https://www.asso-sherpa.org> (검색일 : 2021.10.20).